

#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클리닉 운영 규정

제정 2013.02.26. 규칙 제623호

제정 2015. 8.28. 규칙 제692호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칙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클리닉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직무)**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클리닉(이하 “스포츠클리닉”이라 한다)은 학생, 교직원 등(이하 “대학 구성원”이라 한다)의 건강관리와 진료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
**제3조(조직)** ① 스포츠클리닉에 「의료법」 제35조에 의한 부속의원 및 부속한의원(이하 “부속의원 등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 부속의원에 의원진료실, 물리치료실, 영상실을 두되,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
1. 의원진료실 : 대학 구성원의 진료 및 처치, 질병상담 및 응급처치 등에 관한 사무

2. 물리치료실 : 대학 구성원의 물리치료·보건 등에 관한 사무

3. 영상실 : X-ray촬영, 의료영상의 저장·전송·관리 사무, 보안·관인관수·사무·회계·보험청구 사무와 그 밖에 각 부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무

③ 부속한의원에 한의원진료실을 두되, 대학 구성원의 진료 및 처치, 질병상담 및 응급처치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.

**제4조(소장)** 스포츠클리닉에 소장을 두되, 부속의원의 의사 및 부속한의원의 한 의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한다.

**제5조(진료의사 등)** ① 부속의원 등의 진료의사는 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소지한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겸보한다.

② 그 밖에 의원진료실 및 한의원진료실에 간호직을, 물리치료실 및 영상실에 의료기술직 등 스포츠클리닉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.

③ 제3조제2항 및 제3항 각 실에는 실의장을 둘 수 있으며, 실의장은 스포츠클리닉의 소장이 임명한다.

**제6조(운영위원회)** ① 스포츠클리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대학원장, 사회체육대학원장, 교학처장, 기획처장, 훈련처장, 사무국장, 스포츠클리닉소장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훈련처장이 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스포츠클리닉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2. 스포츠클리닉의 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3. 진료수가 조정에 관한 사항
4. 운영수익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7조(운영지원 등)** ① 운영회계는 대학회계 수입대체경비로 하며,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분임재무관, 분임수입징수관, 분임계약관 및 분임출납관을 둘 수 있다.

② 물리치료실의 운영비를 제외한 스포츠클리닉의 운영비는 자체 수입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, 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학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8조(성과급 등 지급)** 제5조제1항에 의한 진료의사 및 진료한의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료 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**제9조(진료비 청구)**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진료비의 청구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② 부속의원 등의 진료 행위 중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진료에 대하여는 대학 구성원이 진료비를 부담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의료인 의무 등)** ① 부속의원 등에 근무하는 의료인은 『의료법』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소장은 대학 내 부서 및 구성원의 진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사유로 수용이 어려운 경우 요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진료불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부속의원 등에 근무하는 의료인은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상의 급박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료 중에 알게 되는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11조(기타)** 이 규정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체육대학교의 관계 제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부 칙(제623호, 2013. 2. 26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제692호, 2015. 8. 28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